

의안번호	2206659
의 퇴 인	차지호의원
회 답 일	2024.12.26.
추계번호	24C6110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총 1억 3,000만원 (연평균 2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자살실태조사 (안 제11조)	현행(A)	-	-	130	-	-	130
	개정안(B)	130	-	-	130	-	260
	추가재정소요(B-A)						1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)	○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(제1항) ○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 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살예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(제4항)	재량지출
2	안 제11조 (자살실태조사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(제1항)	의무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 (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)	×	○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단축될 경우, 기본 계획수립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될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수립 주기 단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계가 곤란함
2	안 제11조 (자살실태조사)	○	○ “제3차 자살실태조사(2023년) 사업비” 사례를 준용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1조에 따라 자살실태조사 수행 주기가 단축될 경우, 실태조사 수행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자살실태조사의 수행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가정
 - “제 3차 자살실태조사(2023년)” 사업비는 1억 3,000만원임
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법에 따른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2023년에 “제3차 자살실태조사”가 수행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“제4차 자살실태조사” 수행을 위한 사업비와 “제5차 자살실태조사”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각각 2026년과 2029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추계결과, 자살실태조사의 수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총 1억 3,000만원 (연평균2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자살실태조사 (안 제11조)	현행(A)	-	-	130	-	-	130
	개정안(B)	130	-	-	130	-	260
	추가재정소요(B-A)						1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자살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